

# 제1장 과업 개요

##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1.1 과업의 배경

- 현대사회의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높아진 장애인의 사회참여로 인해 교통약자의 사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정부는 1997년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공동주택, 교통수단 등의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였고, 교통부문에서도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인 근거 하에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됨
- 또한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차원의 교통약자 기본계획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07~11), 건설교통부, 2007.04』,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국토해양부, 2012.03』,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국토교통부, 2017.02』이 수립됨
-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각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경기도, 2012』을 수립함
- 광주시는 2013년 5월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1차(2007~2011), 제2차(2012~2016)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하였으며 2차계획 수립후 5년이 경과하여 제3차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의 수립시점이 도래함
- 또한 2016년 현재 광주시의 교통약자 비율은 전체 인구수의 약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증가율도 인구증가율에 비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1.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데에 있으며, 기존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여 선진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동편의시설의 현황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실현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대책 및 계획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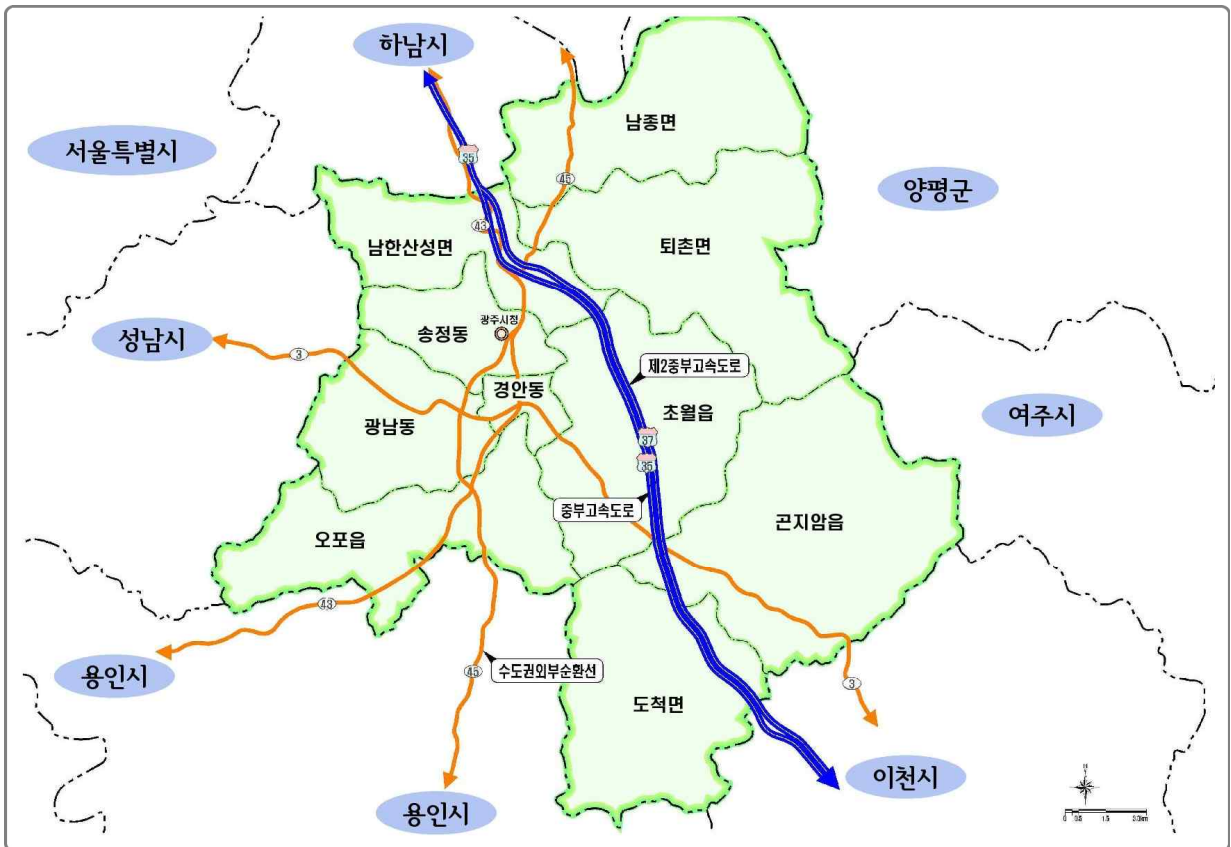
## 1.2 과업의 범위

### 1.2.1 공간적 범위

<b>공간적 범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1차적) 범위 : 광주시 행정구역내</li> <li>● 간접적(2차적) 범위 : 광주시 인접 시군</li> </ul>
---------------	--

<표 1-1> 공간적 범위

구분	범위	내용
1차적	범위	• 광주시 행정구역
2차적	하남시	• 천현동, 덕풍동, 미사동, 초이동, 신장동, 감북동, 풍산동, 위례동, 춘궁동
	성남시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용인시	•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천시	•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창천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
	여주시	• 산북면, 금사면, 대산면, 북내면, 흥천면, 능서면, 오학동, 중앙동, 여흥동, 강천면, 가남읍, 점동면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 1.2.2 시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획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는 2016년이며 목표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2021년으로 함 (5년단위 수립)

<표 1-2> 시간적 범위

구 분	기준연도	목표연도
시간적 범위	2016년	2021년

## 1.2.3 내용적 범위

### 내용적 범위

- 내용적 범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상위계획, 광주시의 지역적 특성, 2차 계획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함

<표 1-3> 내용적 범위

구 분	항 목
1. 과업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 과업의 범위 1.3 법적근거 1.4 과업의 수행과정
2. 2차계획 추진성과 검토	2.1 추진성과 분석의 개요 2.2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성과 분석
3.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3.1 도시 및 교통시설 현황 3.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3.3 교통약자 현황 3.4 교통약자 예측
4.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 및 문제점	4.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조사 4.2 교통약자 이동불편 조사(Tracing Survey) 4.3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문제점
5.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5.1 개요 5.2 국가계획 검토 5.3 광주시 목표 및 추진전략
6. 세부추진방안	6.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6.2 이동불편조사 개선방안 6.3 보행환경개선 방안 6.4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방안 6.5 특별교통수단 공급 증대 방안(바우처 콜택시)
7. 투자 및 재원조달방안	7.1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7.2 광주시 재정규모 분석 및 전망

### 1.3 법적 근거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근거로 하여 특별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중앙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표 1-4>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법적근거

법 적 근 거 관 련 조 항	주요내용
제 1 조 ( 목 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i> </ul>
제 2 조 ( 정 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li> <li>•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li> <li>• “여객시설“이란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li> <li>•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li> <li>•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li> <li>•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li> <li>•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歩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li> <li>•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li> </ul>
제 3 조 ( 이 동 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li> </ul>

법 관 적 연 조 거 항	주요내용
제 4 조 (국가 등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li> </ul>
제 6 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li>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li> <li>-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li> <li>- 보행환경 실태</li> <li>-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li> <li>- 저상(底床)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li> <li>-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li> <li>-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li>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li> <li>-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li> </ul>
제 7 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li> <li>•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li> <li>•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li> <li>•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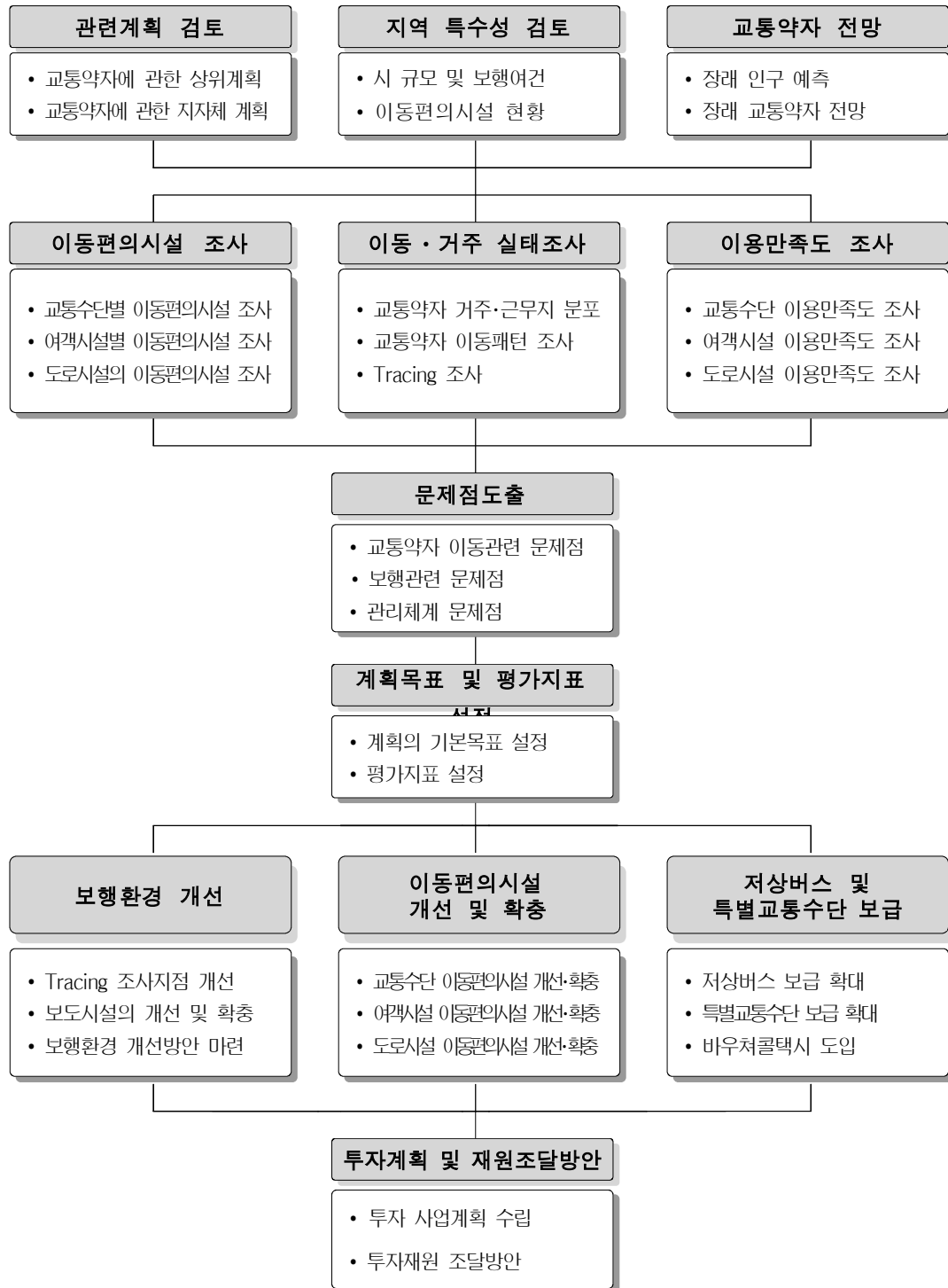
법 관 적 연 관 근 조 거 항	주요내용
<p>제 7 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li> <li>•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li> <li>•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li>•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li> <li>•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ul>
<p>제 8 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i> <li>•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ul>
<p>제 9 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수단</li> <li>- 여객시설</li> <li>- 도로</li> </ul> </li> </ul>
<p>제 16 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한다.</li> <li>•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li> <li>•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li> </ul>

법 관 적 연 근 조 거 항	주요내용
<p>제 1 6 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li> <li>•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li> <li>•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i> <li>•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li> </ul>
<p>제 1 8 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li> <li>•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li> <li>•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li> <li>•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li> <li>•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li>•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li> </ul>
<p>제 1 9 조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li> <li>-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li> <li>-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li> </ul> </li> <li>•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li> </ul>

법 관 연 조 항	주요내용
<p>제 2 1 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도저감시설</li> <li>- 횡단시설</li> <li>-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li> <li>-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li> <li>-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li> <li>-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li> </ul> </li> <li>•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li> <li>•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i> </ul>
<p>제 2 5 조 ( 실태 조 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li> <li>-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li> <li>-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li> <li>- 보행환경 실태</li> <li>-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li> <li>-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li> <li>•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li> <li>•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li> <li>•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li> </ul>

## 1.4 과업의 수행과정

### 1.4.1 과업수행과정



<그림 1-2> 과업 수행 흐름도

### 1.4.2 계획수립 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li> </ul>	
협약·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li> <li>•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제출된 의견서의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부터 60일 이내에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열람, 필요시 공청회 개최</li> </ul>
심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에는 지방 도시교통정책심의 위원회 심의</li> </ul>	
제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경우 : 도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 제출시 첨부서류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li> </ul>
의 견 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제출 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 정책 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제시</li> </ul>	
기본 계획의 확정·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고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의견 반영</li> <li>• 시·군 홈페이지(14일 이상) 및 일간신문(2개이상) 고시</li> </ul>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li> </ul>	
연 차 별 시행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li> <li>•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 -시장 또는 군수: 도지사(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취합·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li> </ul>